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티몬

2. 조치일 : 2025. 11. 10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개선사항 2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 관련 개선

「금융기관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제3자와 금융거래정보 및 금융거래를 제외한 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하기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㈜티몬은 '23.4.1. A사(現 B사)와 정보처리 업무위탁*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탁 계약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* ㈜티몬은 IT인프라 관리 및 서포트, IT 플랫폼 운영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

<조치할 사항>

따라서 회사는 위수탁 보고를 실시하거나 직접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 보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(2) 이상거래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

㈜티몬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여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

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'23.7~'24.6월 기간중 일부 거래내역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일치하는 자전거래 의심건이 확인되었으며,

해당거래는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의 본래 목적과 달리 판매자가 이를 악용하여 해당 혜택을 수취하는 등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<조치할 사항>

따라서 회사는 플랫폼 내에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상거래와 연관된 판매자 및 구매자 등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, 회사의 이상거래 감시체계 등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